

# '11-'12 하계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

2011. 3.

농림수산식품부

# 목 차

I. 사업추진 근거 및 기본방향 .....	
II. 단계별 추진계획 .....	
III. 종자 공급계획 .....	
1. 총괄 .....	
2. 도별 공급계획 .....	
3. 작물별 공급계획 .....	
4. 부족종자 사용계획	
5. 벼 품종별 통합 채종계획 .....	
6. 밭 작물 원종 추가 생산계획 .....	
IV. 단계별 사업담당 및 종자 생산기준 .....	
1. 종자생산 단계별 사업담당 .....	
2. 작물별, 생산단계별 파종 및 생산 기준량 .....	
V. 작물별 세부 추진요령 .....	
VI.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요령 .....	
VII. 보고사항 .....	

---

# I . 사업추진근거 및 기본방향

---

## 1. 사업추진 근거

□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목록등제품종 등의 종자생산)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등을 생산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장,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등에게 그 생산을 대행 가능

## 2. 기본방향

□ (벼) 고품질 품종은 공급을 확대하되, 다수성 품종은 최소화

- 황금누리, 새누리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품종 공급은 확대하는 반면, 호품, 주남벼 등 다수성 품종은 공급 축소
  - 벼 보급종 공급계획 : ('10) 27.1천톤 → ('11) 27.0 → ('12) 24.0
  - \* 고품질 품종 : 황금누리 ('11)1.1천톤→('12)2.7, 새누리 ('11)0.9→('12)2.0
  - \* 다수성 품종 : 호품벼 ('11)2.1톤→('12)0.8, 주남벼 ('11)0.9→('12)0
- 벼 수확기 품종 선호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 공급제' 운영
  - 일정량을 탄력공급량으로 배정하고 수확기 품종별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호품종 증량 구매 및 공급량 확대
-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및 최적 경영체 등에 벼 보급종 수요 전망을 우선 공급하여 쌀의 품종별 브랜드화 지속 지원

□ (콩) 국산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보급종 확대 공급

- 도별 수요전망 공급 예정 ('11) 1,135톤→('12) 1,400(265톤 증)

□ (옥수수) 조사료 국산화를 위해 사료용 확대, 간식용은 공급중단

□ (감자) 채종기관의 포장확보 및 채종여건을 고려,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밭 작물(팥, 참깨, 땅콩) 원종 생산 확대

---

## II. 단계별 추진계획

---

## 1. 종자생산 단계별 생산·공급 작물

- 기본식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쌀,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등
  - 품종육성기관에서 육성한 원래의 종자를 말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생산
- 원원종(10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쌀,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품종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로 각도 농업기술원 및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
- 원종(10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쌀,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각도 농산물원종장 및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
  - ※ 신속한 확대공급이 필요한 품종의 경우 국립종자원에서 부족한 원종을 생산
- 보급종(4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되는 종자로 보급종 또는 보급종 I 이라 말하고, 보급종 II는 보급종 1세대를 다시 증식한 종자
  - 벼·콩 종자는 국립종자원과 지자체(경기도종자관리소, 충청북도농산사업소), 감자 종자는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옥수수 종자는 충북농산사업소에서 생산·공급 담당

## 2. 종자생산 단계별 생산·공급량 결정

### 가. 결정체계

- 지역종자협의회에서 단계별 생산 품종 및 생산·공급량 협의
  - 지역종자협의회구성 : 도, 농업기술원(시·군 기술센터), 국립종자원(지자체 공급기관 포함), 대량 종자수요처(브랜드경영체, RPC, 전업농 등), 농진청(시험연구기관) 등
  - 원원종 및 원종 : 각 도·농업기술원 주관(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 보급종 : 각도·농업기술원 및 국립종자원 주관
  - ※ 특·광역시 소요종자는 국립종자원 지원의 보급종 공급 관할 도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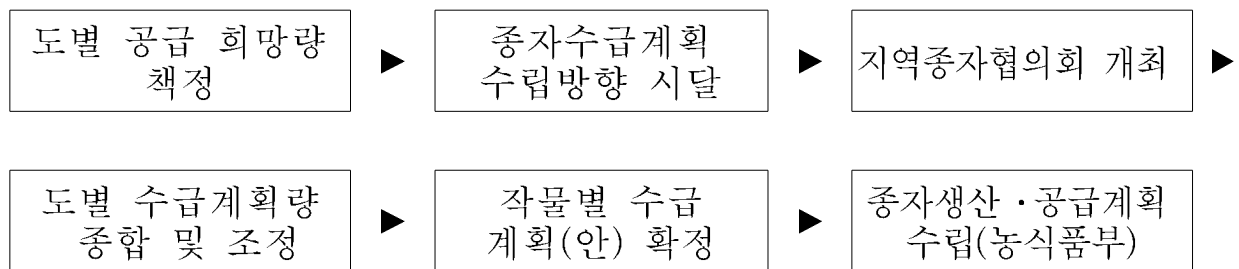
- 지역종자협의회 운영 : 2회(1월, 벼 수확기 이전)
- 벼 품종별 선호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규품종 특성 관찰 등을 위해 수확기 이전에 1회 추가 운영
- 벼 수확기 이전에 개최하는 협의회는 국립종자원장이 주관하여 운영

### ○ 도별 보급종 품종 및 물량 결정

- 지역종자협의회 협의결과를 기준으로 품종별 재배면적, 농가 선호도, 작물별 원종생산량(확보량), 재해 및 병해충에 대한 안정성, 채종 가능면적, 정선능력, 과거 종자신청·공급량, 금후 공급 가능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결정

※ 지역종자협의회에서 결정된 품종은 공공비축미 대상품종에 반영되도록 조치

## 나. 종자 공급계획 수립 절차



## 다. 종자 생산·공급량 결정방향

### ○ 원원종·원종

- 신품종 증식, 농업인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생산계획을 적정 수립하고, 채종기준량에 준하여 목표량 책임생산

### ○ 보급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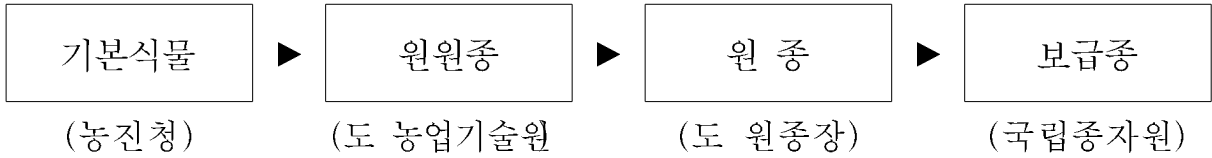
- 정부 공공비축 매입 품종, 고품질 품종 등 농업인 선호품종을 중점 생산
- 공급계획량 달성을 위해 채종기준량, 품종별 감모율 등을 감안하여 보급종 생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계획 수립 추진

※ 채종기준량은 국립종자원 및 지자체 종자생산기관에서 상향조정 가능

### 3. 종자 생산 및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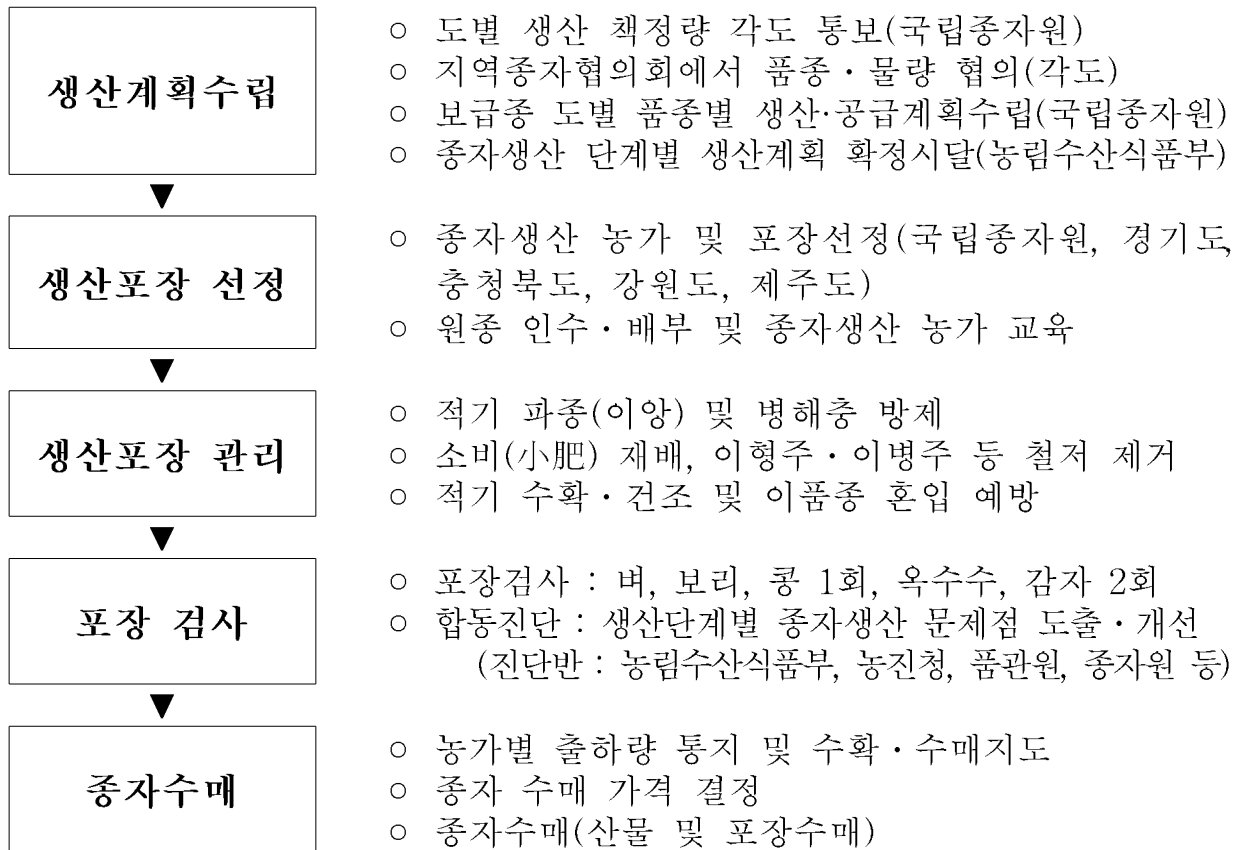
#### 가. 종자생산 절차

##### ○ 종자생산 단계



※ 종자갱신에 필요한 소요종자는 일시에 대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종자를 증식하여 최종단계인 보급종을 수요농가에 공급

##### ○ 보급종 생산 절차



#### 나. 종자생산 및 검사요령

##### ○ 종자생산관리 관련 지침

- 고품질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종자생산단계별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 준용
- 정부 보급종은 국립종자원 관련 예규에 따라 포장관리 및 우량종자 수매 추진

※ 관련 :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64호, '10.8.16)



##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 관련규정 : 종자산업법 제128조(포장검사), 제130조(종자검사등)
- 검사기준 : 종자관리요강에 규정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
- 검사방법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실시요령(품관원 고시 2010-24호)
- 검사기관 및 검사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원종·원종 및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하는 보급종(종자산업법 시행령 72조 3항)
  - 국립종자원 : 동 계획에 포함되어 생산하는 보급종(동 시행령 72조 4항)

## 4. 종자생산 단계별 지역단위 합동진단

### ○ 추진목적

- 상위단계(원원종·원종) 종자의 품종별 재배 특성을 숙지하고 품종의 균일성 및 안정성, 생육상황, 이품종 발생, 병해충 저항성, 키다리병 등 특정병 발생 여부 등 사전 확인 점검

### ○ 합동진단 주관 : 농진청(도, 품관원, 종자원, 지자체 공급기관)

### ○ 관찰시기 및 방법 : 작물별 생육 최성기

※ 포장관찰 시기 및 방법 등은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

## 5. 종자(보급종) 수매 및 가격결정

### 가. 수매계획량

- 작물별 보급종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국립종자원장(지자체 포함)이 결정한 물량

### 나. 수매·공급가격

#### (1) 작물별 수매·공급 가격결정(기준 포함) 주관

- 벼, 콩 : 국립종자원장, 옥수수·감자 : 해당 지자체 결정(국립종자원과 사전 협의)

## (2) 구매가격 결정기준

- **벼** : 당해년도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특등)에 15%를 가산한 금액(기준가격)
  - 받아들에 따라 기준가격±5% 금액을 지급하는 품위별 구매제 운영
  - ※ 찰벼 품종은 채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등가격에 20%를 가산
- **콩** : 수확기(10~11월경) 양곡시장 유통가격과 정부약정 구매 1등급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보상금(15~20% 수준) 가산

### 생산보상금 지급 사유

- ◇ 채종재배는 일반재배보다 모든 작업을 정밀하게 하며 이품종, 이형주, 잡초제거 등을 수차례 실시하고 병충해 방제횟수 2~3회 증가 등 철저한 포장관리로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 추가 소요
- ◇ 종자 충실도 향상을 위한 다수확 재배 지양, 혼종방지를 위한 새 포대 사용, 구매 수송비 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급

- **옥수수·감자** : 생산비와 시중가격, 물가 인상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 채종기관 주관으로 생산비 기초자료 작성, 농촌진흥청(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에 생산비 및 소득 분석·의뢰

## (3) 공급가격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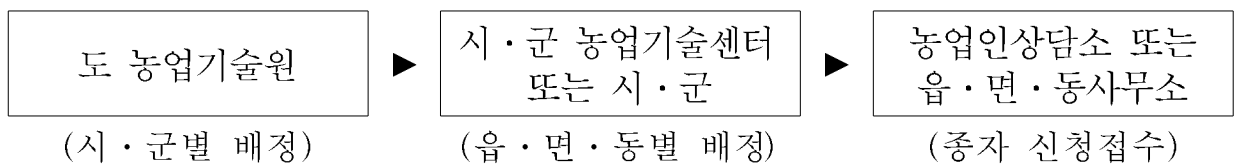
- **기본방향** : 정밀정선, 종자소득 강화 등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투입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 ※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정부 보조비율에 따라 결정
    - 벼 : ('10년산) 10.0%보조→('11) 7.5%, 콩 : ('10년산) 37.5%보조→('11) 25.0%
- **벼** : 종자 생산 투입원가(농안기금)를 감안하여 결정
  - 투입원가의 92.5% 수준을 공급가격(국고납입가격)으로 결정
  - 지자체에서도 국고지원 수준(투입원가의 7.5%)의 추가 지원방안 강구
  - ※ 지방비 부담 여부 및 부담률은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
- **콩** : 종자생산 투입원가(농안기금)를 감안하여 결정
  - 투입원가의 75% 수준을 공급가격(국고납입가격)으로 결정
- **옥수수·감자** : 종자생산 원가(농안기금 투입액) 수준으로 결정

## 6. 종자 신청·공급

### 가. 종자(보급종) 신청

- 신청 접수기관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
- 보급종 신청·공급 방법
  - 국립종자원 예규 제65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10.8.16)에 따라 추진

### 나. 종자신청·접수 절차



### 다. 종자(보급종) 공급

#### (1) 공급량 예시

- 예시방법
  - 시도별, 작물별, 품종별 공급계획량 범위 내에서 「종자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시
  - \* 작물별 예시 시한 : 벼(11.5), 콩(1.30), 옥수수(10.30), 감자(추기 7.30, 춘기 10.30)

#### ○ 예시기관

- 벼, 보리, 콩 : 국립종자원 지원장, 지방자치단체 종자공급기관장
- 감자, 옥수수 : 지방자치단체 종자공급기관장

#### (2) 공급업무 주관 기관

- 벼·콩 보급종은 자도생산·자도공급 원칙에 따라 국립종자원과 지자체 종자공급기관(경기, 충북, 제주)에서 해당 관할 지역에 책임 생산·공급
- 지자체에서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감자(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옥수수(충청북도농산사업소) 보급종은 해당도에서 책임 공급
- ※ 관련예규 :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국립종자원 제64호. '10.8.16)

### (3) 벼 보급종은 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우선공급 확대

-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에 정부 벼 보급종을 우선 신청 받아 신청전량 공급
  - 다만 RPC, 육묘장, 쌀 전업농 등 대량 수요처 공급량은 도 농업기술원, 관할 국립종자원(경기, 충북 포함)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정

## 7. 상위단계 종자보관 및 품질검정

- 원원종, 원종은 보급종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 품종별 종합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보관·관리(원원종 3년, 원종 2년)
- 국립종자원은 순도, 발아율, 건전도 등 품질 좋은 상위단계 종자 확보를 위해 자체 품질검정을 실시하고 생산기관과의 협력 강화
- 찰벼 등 특수 기능성 품종 등에 대해서는 적정 품질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차하급 단계로 종자를 인도하여야 하며, 인수기관에서도 자체 품질검정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사전에 확인

## 8. 원원종 및 원종 활용

- 국고보조금으로 생산한 원원종·원종은 생산전량(불합격품 포함)을 차하급단계 종자 생산기관으로 무상 인계하고, 종자 수송은 수요기관에서 담당
  - 벼·콩·감자는 원종뿐 아니라 원원종 활용잔량까지 국립종자원(자체 공급기관 포함)에서 관할 지역 물량을 일괄 인수하여 활용
  - ※ 단, 잔량이 10kg 이하 원원종은 시험연구 등 도 자체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인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종단계별로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소요종자가 부족할 경우 하위단계 종자를 격상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지도기관의 품종비교 전시포는 최근에 육성된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위주로 설치하여 농업인 등에게 비교·홍보

---

### Ⅲ. 종자 공급계획

---

1. 총괄 (엑셀자료 별첨)

2. 도별 공급계획 (엑셀자료 별첨)

3. 작물별 공급계획 (엑셀자료 별첨)



다. 원 종(보급종 생산용 종자)

- 벼 10품종 37,750kg (타도전배 10,245, 보급종 재사용 27,505)
- 콩 4품종 6,529kg (타도전배 6,529)

작물	종자부족 및 인수기관			종자보유 및 전배 기관									
	도	품 종	수량 (kg)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재증식	
벼	경기	대안	600		370	230							
		칠보	40			40							
	충북	추청	675							675			
	충남	황금누리	16,905									16,905	
	전북	황금누리	500										500
		새누리	1,900										1,900
		신동진	2,900										2,900
		온누리	4,100						4,100				
		동진찰벼	650							650			
	전남	황금누리	1,450										1,450
		새누리	750										750
		일미	3,280								3,280		
	경북	화영	260									260	
		일품	1,355										1,355
		동진1호	1,235			450							785
	경남	동진1호	960										960
추청		190				190							
콩	강원	대원	1,380					1,380					
		태광	360								360		
		대풍	300			300							
	충남	대원	2,760							2,760			
	전남	태광	95								95		
	경남	대원	684							684			
	제주	풍산나물	950				550	250	150				



## 5. 벼 품종별 채종계획

○ 벼 : 1,700톤 (9품종)

품종명	물 량 (톤)	공급기관	생산기관	비 고
삼 광	100	강원지원	충남지원	
	120	경북지원	충남지원	
운 광	120	충남지원	강원지원	
새누리	590	충남지원	전북 정읍	
온누리	410	전남지원	전북 정읍	
오 대	20	경북지원	충북농산사업소	
	55	경기지원	강원지원	
추 청	90	경북지원	충북농산사업소	
	60	강원지원	경기종자관리소	
동진찰	65	경북지원	전북지원	
칠 보	40	경남지원	경북지원	
삼 덕	30	경남지원	경북지원	

## 6. 밭 작물 원종 추가 생산 계획

□ 각 도별 재배면적과 희망 작물을 감안하여 특화작물 선정하고 종자를 통합 생산하여 활용

- 팔 : 충북, 전북, 전남
- 참깨 : 경기, 경북
- 땅콩 : 전북, 경북, 경남

※ 강원, 충남은 채종포장 부족으로 생산 작물이 없음

□ 통합 생산계획에 반영된 사업량에 대해 원종 국고보조금 지원

□ 생산된 종자는 보급종 생산용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 활용방안 마련

□ 2011년 도별 밭 작물 원종 추가 생산 계획

(단위 : a, kg)

작물	도	2011년 생산 계획량				소요종자 확보방안		
		품종	면적	종자 소요량	생산량	원원종	원종 재증식	기타
계	3작물 7품종		440		2,970			
팔	전북	충주	100	40	700	6	34	
	충북	충주	30	12	210	12		
	전남	충주	20	8	140	8		
	소계		150	60	1,050			
참깨	경북	선백	50	2.5	150		2.5	
		양안	50	2.5	150			농진청분양
	경기	황백	40	2.0	120	2.0		
	소계		140	7	420			
땅콩	전북	팔광	20	22	200	17	5	
	경북	조평	50	55	500		55	
	경남	아광	80	88	800		88	
	소계		150	165	1,500			

※ 도별 생산계획량에 밭작물 원종 확대 계획량이 포함되어 있음

---

## IV. 단계별 사업담당 및 종자생산 기준

---

# 1. 종자생산 단계별 사업 담당

	원 원 종	원 종	보 급 종
벼	각도 농업기술원	각도 원종장	국립종자원 (경기도종자관리소, 충북도농산사업소)
콩	"	"	국립종자원 (경기도종자관리소, 충북도농산사업소, 제주도농업기술원)
옥수수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감 자	강 원 도 감자종자진흥원	강 원 도 감자종자진흥원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전북(무주군, 진안군) 경북(봉화군, 영양군)
팥	각도 농업기술원	각도 원종장	시·도
녹 두	"	"	"
고구마	"	"	"
참 깨	"	"	"
들 깨	"	"	"
땅 콩	"	"	"

※ 광역시(특별시 포함) 보급종 공급에 소요되는 원원종, 원종생산은 광역시 승격 이전에 소속 되었던 해당 도에서 생산

## 2. 작물별, 생산단계별 파종 및 생산 기준량

(단위 : kg/ha)

작물별		원원종			원종			보급종		
		파종	생산량	배율	파종	생산량	배율	파종	생산량	배율
벼	수도	15	1,500	100	50	4,500	90	50	5,500	110
	육도	20	800	40	35	1,200	34	50	1,500	30
	초다수성	15	2,000	133	40	5,000	125	50	7,000	140
콩	일반콩	40	1,000	25	60	1,200	20	60	1,400	23
	콩나물콩	40	1,000	25	50	1,200	24	50	1,400	28
팥		30	600	20	40	700	17.5	50	900	18
녹두		15	500	33	15	500	33	20	800	40
고구마		750	13,000	17	750	13,000	17	750	13,000	17
감자	봄감자	1,200	12,000	10	1,300	16,000	12.3	1,600	18,000	11.3
	가을감자	1,800	13,000	7.2	1,800	13,000	7.2	1,800	16,000	8.9
옥수수	광평옥	20	800	40	20	1,000	50	33	1,600	48.5
	일미찰	20	400	20	20	700	35	30	1,300	43.3
	흑진주찰	20	400	20	20	700	35	30	1,200	40.0
땅콩	보통종	80	1,000	12.5	80	1,000	12.5	100	1,200	12
	대립종	110	1,000	9.1	110	1,000	9.1	135	1,200	8.9
참깨		5	200	40	5	300	60	8	400	50
들깨		3	300	100	3	300	100	3	400	133
유채		0.5	1,000	2,000	0.5	1,500	3,000	10	1,800	180

- ※ ① 보급종 생산기준량은 공급목표량을 감안, 국립종자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② 옥수수 원원종·원종은 자식계통, 보급종은 단교잡종 생산 기준량임  
 ③ 원종 파종기준량 상향 조정('12년부터 적용) : 벼(수도) 50, 일반콩 60

---

## V. 작물별 세부 추진요령

---

# 1. 공통사항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p>1) 세부실천계획 수립</p> <p>2) 종자활용</p>	<p>가) 채종기관은 자체 종자생산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우량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p> <p>가) 단계별 보유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물별, 품종별 생산계획에 의거 차 하급단계 생산용 종자로 무상공급</li> <li>(단 도비 생산종자는 도지사가 방침결정 시행)</li> </ul> <p>나) 채종단계별 종자생산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종자는 생산기관에서 종자검사를 받은 후 차 하급단계 채종기관에 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를 지원 받아 생산한 원원종은 불합격품 및 원종생산용 이외 잔량은 전량 관할 국립종자원(지자체 포함)에 인계</li> <li>※ 잔량이 10kg이하 원원종 품종은 국립종자원 해당 지원과 협의 후 자체 활용가능</li> <li>○ 국비를 지원 받아 생산한 벼·콩·감자 원종은 불합격품을 포함하여 전량 관할 국립종자원(지자체 포함)에 인계</li> <li>○ 채종 단계별로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소요종자가 부족할 경우 하위단계 종자를 격상하여 활용 가능하다</li> </ul> <p>다) 종자 수송조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생산에 필요한 종자는 수요기관에서 책임 인수(수송)</li> </ul> <p>라) 종자생산 단계별 생산에 활용하고 남는 종자는 차 하급단계 종자생산에 우선활용</p>	<p>채 종 기 관</p> <p>채 종 기 관</p>
<p>3) 생산비 보조</p>	<p>가) 생산사업비 국고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액 : 3,950백만원(전년대비 증 493백만원)</li> <li>- 원원종 405백만원, 원종 3,545백만원</li> <li>○ '11년 생산비 국고보조 금액은 계획 확정 후 배정('11.3.)</li> </ul> <p>나) 원원종·원종 생산목표량 미달 시 익년도 보조금 차등 지원</p> <p>단,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p>	<p>종자원</p>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기본식물	<p>가) 농촌진흥청장은 작물별 기본식물 생산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보급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품종별 적정량 생산</p> <p>나) 종자수급상 긴급한 증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품종별로 여유 있게 생산</p> <p>다) 기본식물 부족으로 하위단계 종자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품종은 동계증식을 통하여 최대한 증량생산</p> <p>라) 종자전염병(키다리병 등) 관리를 위해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고 기본식물 포장 외 지역적응성 포장, 육종 포장의 철저한 관리 실시</p>	농진청
5) 원원종, 원종, 보급종	<p>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종자산업법 관련규정 엄격히 준수</p> <p>나)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채종포장 선정·관리·수확·조제를 실시하여 우량종자 생산·공급</p> <p>다) 고품질 품종 중 각 지자체에 맞는 4~6개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에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 실시</p> <p>라) 금년도 신규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을 활용하여 차 하급단계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에서는 품종 육성기관으로부터 재배상 품종의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 받아서 종자로 활용</p> <p>마) 원종장 잉여포장에는 신규 보급종 생산 품종을 최 우선 재배하도록 하고, 남는 포장은 찰벼 또는 조생종벼 등 종자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품종을 생산</p>	채 종 기 관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6) 기타	<p>바) 종자생산은 생산된 전량에 대하여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차 하급단계 종자생산에 활용</p> <p>사) 보급종 생산포장에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파종, 시비, 방제 등 채종포장관리를 책임 지도하도록 조치</p>	<p>행정 (품관원)</p> <p>각 도</p>
	<p>아) 자도 생산종자는 자도 책임 하에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도 지사는 종자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종자공급 차질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후대책 강구</li> <li>○ 종자생산 · 공급계획에 반영된 보급종 품종은 공공매입품종 우선 선정 등 조치</li> <li>○ 일방적인 종자공급 중단 등 종자갱신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때에는 각종 종자생산 공급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li> </ul>	<p>각 도 종자원</p>
	<p>자) 종자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하고 채종포와 주변포장관리 실시</p>	<p>채 종 기 관</p>
	<p>가)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등 보급종을 생산하지 않는 곡종은 원종급 이상 생산된 종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자 생산용으로 활용</p>	<p>각 도 농진청</p>
	<p>나) 종자를 공급받은 농가는 채종농가로 지정하여 보급종 생산농가에 준하는 기술지도 실시</p>	<p>각 도</p>
	<p>다)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포장검사 및 종자 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보급</p>	<p>각 도 품관원</p>
	<p>라) 생산된 보증종자에 대하여 공급실적 대장을 별도 비치 관리하여 우량종자가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p>	<p>각 도</p>

항 목	실 천 사 항	시 한	담당 (협조)
	마) 작물별 보급종 사후관리 시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 벼, 콩, 옥수수, 감자</li> <li>○ 조사항목 : 순도, 진위성, 종자전염병</li> <li>○ 조사기준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실시 요령에 준함(품관원 고시)</li> <li>○ 조사연도 : 매년</li> </ul> * 사후관리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립종자원 세부추진계획에 의함		종자원
7) 보고내용	가) 주요농작물종자 채종단계별 생산실적 보고 나) 2011년 작물별, 채종단계별 생산계획 수립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로 4~6개 고품질 품종을 선정 하여 농가보급 확대 추진</li> <li>○ RPC의 수매 품종 및 시·군별 수매선정 품종 등을 참고하여 종자생산계획에 최 대한 반영</li> <li>○ 쌀브랜드 우수경영체 및 최적 경영체에 대한 품종별 종자수요량 조사</li> <li>○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품종 위 주로 생산하되 신품종 보급을 위한 농가 홍보 계획을 수립 추진</li> <li>○ 익년도 차하급단계 종자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단계 종자는 충분한 양을 생산</li> </ul>	2012.1.05  2012.1.31.	채 종 기 관  채 종 기 관

## 2. 비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품종개발	가) 밥맛이 우수하고 병충해, 도복 등에 대한 내재해성을 갖춘 우량 고품질 품종 나) 가공용, 직파적응성, 유색미, 향미 등 특수용도에 적합한 품종 다) 개발된 계통중 특히 우수한 계통은 농가에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원원종급 종자를 동시생산	농진청
2) 기본종	가) 채종단계별, 품종별 수요량을 감안한 생산계획을 수립하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종자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생산·보관 나) 품종별 재배특성을 고려, 채종지 선정에 유의하고 특히 신품종 채종의 경우 시험재배성적과 다른 재배 특성 등이 있는 때에는 계통 보고하여 차년도 채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3) 원원종, 원종	가) RPC, 쌀 브랜드 경영체 등 대량 수요처의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종자 위주의 품종을 생산하여 차년도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채종하되 생산된 전량을 종자생산 실적으로 보고 나) 최근에 육성된 신품종의 채종기관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품종육성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 유지	각 도
4) 보급종	가) 채종포장지정·재배관리는 『채종단계별 종자생신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품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관리 ○ 병해 상습발생 지역은 채종지역에서 제외	종자원 지자체종자 생산기관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p>나) 경영체 중심으로 보급종 우선 공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제고 및 벼 보급종 공급량 확대에 따라 신청·공급체계를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최적경영체, RPC, 육묘장 등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우선 신청·공급 전환</li> <li>○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최적경영체에 대해서는 신청전량 공급하고,</li> <li>○ RPC, 육묘장 등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품종별 공급배정량을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조정·결정</li> </ul> <p>다) 채종농가 생산지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종농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li> <li>○ 채종포에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파종, 시비, 포장검사, 건조, 수매 등 재배기술의 현장 지도</li> </ul> <p>라) 농업기술센터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을 위주로 전시포를 설치하여 농가 홍보</li> <li>○ 국가품종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품종은 전시포 설치 금지</li> <li>○ 재배완료 후 관련기관, 재배농가가 참가하는 평가회 개최</li> <li>○ 종자용으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 보증을 받는 등 종자산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li> </ul>	<p>농식품부 종자원 각 도</p> <p>종자원 각 도</p> <p>농진청 각 도</p>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p>다) 보급종을 생산하지 않는 팔, 녹두는 여유 종자 전량을 종자로 활용</p> <p>라) 자율 채종포장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도지사는 국립종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 자체 자율교환 종자생산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 갱신을 제고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최근 육성된 신품종 및 특수용도 품종 적극 권장</li> </ul> </li> <li>○ 채종포장은 대 면적으로 집단화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을별 단지 조성 및 각 도 원종장 잉여포장 적극 활용</li> <li>○ 생산관리지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급종 채종 관리에 준하여 전담 지도사를 배치</li> <li>- 채종농가 채종기술 지도철저</li> <li>- 파종, 시비, 포장검사, 건조, 수매 등 주요 작업시기에 입회하여 지도</li> </ul> </li> </ul>	<p>각 도</p> <p>각 도</p>

#### 4. 감 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기본식물	<p>가) 채종단계별, 품종별 농가선호도 등 수요량을 감안하고,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품종을 채종·보관</p> <p>나) 종자산업법과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 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채종하고 채종포장 전면적의 망실재배로 바이러스 감염 등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우량종자를 생산</p> <p>다) 생산된 기본식물은 우선 원원종 생산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원원종 생산용으로 활용되지 않은 종자는 통상실시권 부여 등의 조건으로 민간에 공급</p>	농진청 (고령지 농업연구 센터)
2) 원 원 종	<p>가) 바이러스 이병방지를 위해 전량 망실재배 실시 ○ 원원종 재배면적 확대 필요시 소요예산 확보 추진(국립종자원, 강원도)</p> <p>나) 원종 생산용으로 활용하고 남은 종자는 보급종으로 격하공급</p>	감자종자 진흥원 종자원
3) 원 종	<p>가) 생산기관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p> <p>나) 바이러스 이병방지를 위하여 전량 망실 재배하고 망실재배에서 생산된 종자만 보급종 생산에 활용</p> <p>다) 보급종 생산용으로 활용하고 남은 종자는 보급종으로 격하 공급</p>	감자종자 진흥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보 급 종	<p>가) 채종포장 지정·재배관리는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지정·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종농가에 대한 사전교육 등 생산지도 철저</li> </ul> <p>나) 지방자치단체의 우량종자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장은 포장격리거리, 운작체계 등을 고려, 적정면적 확보</li> <li>○ 채종농가 선정 및 포장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종포장 지정은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지정</li> <li>-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봄감지는 가능한 해발 700m 이상 지역 선정</li> </ul> </li> <li>○ 강원, 전북(무주, 진안), 경북(봉화, 영양)은 포장관리 전담지도사를 지정하고 파종, 시비, 방제, 이병주 제거 등 포장관리 및 바이러스 식별 등 채종농가에 대한교육 실시</li> <li>○ 수매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된 종자는 생산주체기관(강원도, 전북 무주·진안, 경북 봉화·영양)에서 수매</li> <li>- 전북(무주, 진안), 경북(봉화, 영양) 생산종자는 자도 조기 육아용으로 공급</li> <li>- 강원도지사는 생산된 종자를 책임보관·관리하고, 보관·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도지사 책임 하에 해결</li> <li>- 해당 지자체단체장은 생산계획 대로 종자가 수매·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 강화</li> </ul> </li> </ul>	<p>감지종자 진흥원</p> <p>강원도 경북 전북</p>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6) 기 타	마) 채종기관 기술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 ○ 채종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 활성화 ○ 우량종자 생산 기술의 상호지원	품관원
	바) 채종포장 환경개선 ○ 이병주 조기제거 철저 ○ 적응농약 적기살포 ○ 법정 격리거리내의 오염식물 식재방지 및 제거	감자종자 진흥원
	가) 채종포 주변 정화 ○ 원종 잔량 및 규격외서는 채종지 주변의 환경 정화용으로 유상 공급 가능 ○ 정화 지역에는 보급종 잔량을 최우선 공급	감자종자 진흥원
	나) 민간의 씨감자 생산 참여 유도를 위하여 종자를 생산하지 않는 품종 및 잉여 원종잔량은 생산자 단체에 유상 분양. 다만 민간참여로 보급종 생산이 중단되는 품종은 감자 종자 안정공급을 위하여 원종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생산	종자원
	다) 신규육성품종의 농가홍보강화를 위하여 차하급단계 종자로 활용하고 남는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의 품종비교 전시포에 무상 공급하여 농가 홍보용으로 활용 ○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및 평가회 개최	농진청 (고령지농업 연구센터)
라) 가을감자는 수급전망 등을 분석하여 농진청과 국립종자원이 협의하여 종자생산체계 확립 여부 검토	농진청 (종자원)	

## 5. 고구마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신품종육성 및 기본식물 생산	가) 고 전분 가공용, 생식용, 고 감미성 등 품종 고유 특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 ○ 우량 형질 및 유전자원 수집 확보 ○ 적지 시험 및 각 도 재해 검정시험 강화  나) 계통 유지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품종별로 충분한 종자를 확보	농진청
2) 원원종, 원종	가) 농가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위주로 생산하되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생산량 확보  나)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순도높은 우량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병해 상습발생 지역은 윤작체계를 유지  다) 생산된 종자는 저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감모량 최소화  라) 종자 공급시는 반드시 출고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종자의 농가공급 사전방지	농진청
3) 보 급 종 (기타)	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시범포 또는 시·군 채종포를 설치하여 우량종자 생산  나) 농가에 보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급종 종자에 준하여 생산·지도하고, 종자검사를 받은 후 보급 하여 우량종자가 농가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채종 농가 관리 철저	농진청

## 6. 옥수수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신품종육성	가) 사료용 품종의 적극 개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품종에 대응한 대체품종 적극 개발</li> <li>○ 우량 형질 및 유전자원 수집 확보</li> <li>○ 재배 적지시험 및 지역별(각도) 재해검정 시험 강화</li> </ul> 나) 단계별 종자생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품종특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차년도 종자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농진청
2) 기본식물 및 원원종	가) 기본식물은 계통유지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품종별로 충분한 종자 확보 나) 원원종은 우량 신품종 위주로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종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보유중인 원원종 재고량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년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li> <li>○ 사료용 옥수수 원종 사용 잔량을 보관, 관리하여 차년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li> <li>○ 재고종자는 종자검사를 받아 우량종자만 활용</li> </ul>	농진청 옥수수 시험장 (종자원)
3) 원 종	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료용 품종위주로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교잡 및 혼종방지를 위하여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과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 준수</li> <li>○ 옥수수는 채종이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채종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하급 단계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확물 관리 철저</li> </ul>	강원도 농산물원 종장 (종자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보 급 종	<p>가)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적지 채종포장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해 상습지는 채종포장에서 제외</li> </ul> <p>나) 사료용 옥수수 사전주문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관련 단체 대상으로 공급계획물량의 50%를 사전 주문받아 공급</li> </ul> <p>다) 원종은 암수(♀,♂) 종자구분을 위하여 종자친(♀)에만 붉은 색소(레드-4G)로 착색 소독하고 화분친(♂)은 착색하지 않고 소독만 실시하여 채종농가에 공급</p> <p>라) 농업기술센터는 우량종자를 생산하도록 채종 단지에 대한 채종지도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종단지에 전달지도사 지정</li> <li>○ 채종농가 사전교육 실시</li> <li>○ 채종지역 애멸구, 조명나방 발생상황(발아성장기) 예찰 통보 철저</li> </ul> <p>마) 국내산 보급종의 우수성 홍보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특성 및 재배상의 유의사항 등</li> </ul>	충북 농산 사업소 (농진청, 종자원)
5) 종자활용	<p>가) 우량종자 중 생산년도가 오래된 원원종, 원종을 먼저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보관중인 원원종, 원종은 발아율 시험 등을 거쳐 우량종자만을 사용</li> <li>- 보관기간 10년 이상 경과, 발아율이 85%미만 또는 향후 종자 활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매각·폐기 등 적정 조치</li> <li>○ 사용 잔량은 차년도 종자생산용으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보관 상태 점검</li> </ul>	종자원

## 7. 참깨, 들깨, 땅콩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원원종, 원종	가) 참깨, 들깨, 땅콩의 품종별 주요특성을 감안하여 최적 채종포장을 선정 나) 다수확 재배방법을 지양하고 소비 재배를 통한 건전한 종자생산 다) 병충해의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병해 발생시에는 초기 방제를 실시하여 무병 우량종자를 생산 라) 이상 기후, 병해충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 하여 충분한 종자 확보 마) 신품종의 생육단계를 시험재배 성적과 비교 분석하여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여 농가 공급시 문제점 사전 해소	농진청
2) 기타	가) 해당 시·도지사는 신품종 보급 부진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인, 독농가를 채종농가로 선정 ※ 채종포는 농촌진흥청장이 설치하는 시범포를 우선 지정 활용 나) 농가채종포 설치 및 추진상황 점검 등 농가지도 철저 다) 농가채종포에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채종농가 사전교육, 병충해 예찰강화 등을 통한 우량종자 생산 라) 농가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는 종자검사 후 희망 농가에 공급	농진청

---

## VI.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요령

---

항 목	실 천 사 항	시 한	담당 (협조)				
1) 합동진단	가) 병해충 발생 사전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하여 합동진단 실시 ○ 합동진단 실시회수 및 기관	7월중  8월중	농식품부 (농진청, 품관원, 생산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2 589 501 674">작물별</th> <th data-bbox="501 589 663 674">단계별</th> <th data-bbox="663 589 770 674">회수</th> <th data-bbox="770 589 1125 674">진단기관</th> </tr> </thead> </table>			작물별	단계별	회수	진단기관
	작물별			단계별	회수	진단기관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352 674 501 842">봄감자</td> <td data-bbox="501 674 663 842">전단계 (기본식물 포함)</td> <td data-bbox="663 674 770 842">1회</td> <td data-bbox="770 674 1125 842">농식품부, 농진청 (농과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종자원, 품관원</td> </tr> </tbody> </table>			봄감자	전단계 (기본식물 포함)	1회	농식품부, 농진청 (농과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종자원, 품관원
	봄감자			전단계 (기본식물 포함)	1회	농식품부, 농진청 (농과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종자원, 품관원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352 842 501 976">옥수수</td> <td data-bbox="501 842 663 976">전단계 (기본식물 포함)</td> <td data-bbox="663 842 770 976">1회</td> <td data-bbox="770 842 1125 976">농식품부, 농진청 (식량과 학원), 종자원, 품관원</td> </tr> </tbody> </table>	옥수수	전단계 (기본식물 포함)	1회	농식품부, 농진청 (식량과 학원), 종자원, 품관원			
옥수수	전단계 (기본식물 포함)	1회	농식품부, 농진청 (식량과 학원), 종자원, 품관원				
나) 합동진단 내용 및 방법 ○ 진단순서 : 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 - 단,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 병해충 진단 및 순도향상을 위한 채종방법 등 정보교환 ○ 채종상의 문제점 분석 및 채종방법 개선조치 ○ 채종기술 지도 및 교육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2) 포장검사	가) 종자산업법 관련규정 및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실시요령』에 의한 포장검사 실시 나) 작물별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품관원 종자원 (농진청, 채종 기관)
	작물별	단계별	자체	정기	검사기관	
	벼, 콩, 고구마, 땅콩, 참깨, 들깨, 팥, 녹두	원원종 원 종 보급종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품관원 품관원 종자원	
	봄감자	원원종 원 종 보급종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품관원 품관원 종자원	
	옥수수	원원종 원 종	2회 2회	2회 2회	품관원 품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종기관은 정기 검사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포장 검사 결과를 정기 검사시 제출</li> <li>다) 검사기준 및 시기는 종자산업법 『종자관리요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별표에 의함</li> <li>라) 채종기관 및 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검사개시 10일전까지 관할 품관원장 및 종자원장(정부 보급종)에게 검사신청</li> <li>마) 채종단계별, 작물별 검사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결과, 총괄표, 수검기관별 검사기간, 품종별 검사항목별 내역 첨부</li> <li>○ 포장조건, 특기사항, 문제점, 지적사항, 검사자 의견 등 보고</li> </ul> </li> </ul>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3) 종자검사	<p>가) 종자검사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원종·원종·보급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li> <li>- 보급종 : 국립종자원(정부 보급종에 한함)</li> </ul> <p>나) 검사기준 및 방법은 종자산업법 『종자관리요강』 및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실시요령』에 의함</p> <p>다) 채종기관 및 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0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검사개시 3일 전까지 관할 품관원장 및 종자원장(정부 보급종)에게 검사신청</p> <p>라) 옥수수, 감자의 순도검정 및 감자의 동계검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전담 실시</p> <p>마) 벼 원원종, 원종은 종자유통과정에서 품종진위, 이형주 발생 등 문제점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기관별(생산기관, 검사기관, 차하급 인수기관)로 합성시료 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료보관 기관 : 원원종 3년, 원종 2년, 보급종 1년</li> </ul>	<p>품관원 종자원 (채종 기관)</p> <p>농진청 (작물원, 고령지농업 연구센터)</p>																
4)채종단계별 지역 단위 합동진단	<p>가) 채종단계별 종자생산포장 합동진단 대상 작물인 감자, 옥수수 이외의 벼, 콩에 대해서도 지역별 합동진단을 실시, 문제점의 조기과약·대처 및 종자생산업무 추진에 반영</p> <p>나) 지역별 합동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단위 관계전문가로 합동 진단반을 편성하여 추진</li> </ul> <p>다)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작물 : 벼, 콩</li> <li>○ 지역별 합동진단반 구성</li> </ul> <table border="1" data-bbox="360 1816 1294 2094"> <thead> <tr> <th>지역</th> <th>주관</th> <th>참여기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충부</td> <td>식량과학원</td> <td>도, 품관원, 종자원 지원, 기술원, 원종장</td> <td>경기, 강원, 충북, 충남</td> </tr> <tr> <td>호남</td> <td>벼맥류부</td> <td>"</td> <td>전북, 전남</td> </tr> <tr> <td>영남</td> <td>기능성 작물부</td> <td>"</td> <td>경북, 경남</td> </tr> </tbody> </table>	지역	주관	참여기관	비고	충부	식량과학원	도, 품관원, 종자원 지원, 기술원, 원종장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호남	벼맥류부	"	전북, 전남	영남	기능성 작물부	"	경북, 경남	<p>농진청 (종자원)</p> <p>농진청 (품관원, 종자원)</p>
지역	주관	참여기관	비고															
충부	식량과학원	도, 품관원, 종자원 지원, 기술원, 원종장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호남	벼맥류부	"	전북, 전남															
영남	기능성 작물부	"	경북, 경남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5) 키다리병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및 회수 : 작물별 출수기 또는 개화기에 1회</li> <li>○ 대상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채종단계별 해당지역에서 처음 생산하는 품종으로 하되, 집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원원종, 원종을 중심으로 실시</li> </ul> </li> <li>○ 진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물별, 품종별 채종단계(원원종, 원종, 보급종) 포장의 일부면적을 진단 대상포장으로 설정하여 이형주, 이품종 발생상태, 병해충 저항성, 키다리병 발생 및 생육상황 등을 종합 평가</li> <li>- 포장설정 규모, 생육상황, 진단항목 종합평가, 처리 대책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사전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li> <li>- 지역간 실시방법 조정 및 종합보고(농진청)</li> </ul> </li> <li>○ 종자생산단계별 키다리병 이병 방지를 위한 채종포 인근포장 이병주제거 및 종자소독 철저</li> <li>○ 채종단계별 종자 소독 시 발아기를 이용하여 30℃, 48시간을 철저히 준수</li> <li>○ 벼 키다리병 발생확인을 위한 채종단계(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별 포장관찰 실시</li> </ul> <table border="1" data-bbox="360 1424 1246 1514"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지 역</td> <td style="width: 33%;">주 관</td> <td style="width: 33%;">참 여 기 관</td> </tr> <tr> <td>각도</td> <td>국립종자원</td> <td>농진청·기술원·원종장</td> </tr> </table>	지 역	주 관	참 여 기 관	각도	국립종자원	농진청·기술원·원종장	<p>농진청 (품관원, 종자원)</p> <p>농진청 도원 원종장 종자원</p>
지 역	주 관	참 여 기 관						
각도	국립종자원	농진청·기술원·원종장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및 회수 : 2회(6~7월)</li> <li>가) 작물별, 시기별, 검사인력 배치 및 특정작물에 대한 종자 및 포장검사기술 교육계획 수립추진</li> <li>나) 정부 보급종 종자보증업무 이관에 따라 채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감자·옥수수 등의 검사인력 확보 및 기술 축적을 위한 전문 보증 인력 집중 육성</li> <li>다) 벼 품종 육성자가 벼 출수기를 전후하여 원원종, 원종 채종포를 집중 관찰하고 생육장애 및 이형주 등 문제 발생시 현장 지도 조치</li> </ul>	<p>품관원 종자원 농진청 채종기관 (품관원)</p>						

---

## VII. 보고 사항

---

항 목	보 고 명	시 한	보고기관
보고사항	주요농작물종자 원원종, 원종 종자생산 실적·계획 보고  주요농작물종자 보급종 공급 계획·실적 보고	실적 : 익년 1.05. 계획 : 익년 1.31.  계획 : 익년 1.31. 실적 : 익년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청 (기본식물)</li> <li>○ 농업기술원 (원원종)</li> <li>○ 농산물원종장 (원 종)</li> <li>○ 국립종자원 (보급종)</li> </ul>

- 채종단계 :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 대상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제반 보고는 농식품부장관과 국립종자원장에게 동시 발송

(보고양식1)

## 주요농작물종자 채종단계별 생산(공급) 실적 보고

채종단계	작물명	품종명	생산(공급) 계획			생산(공급) 실적	비율	검사결과
			면적	종자량	목표량			
			a	kg	kg	kg	%	

※ 원원종·원종은 생산계획 및 실적, 보급종은 공급계획 및 실적을 입력

※ 검사결과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 사유 기재

(보고양식2)

## 작물별, 채종단계별 생산·공급계획 수립보고

### <원원종 및 원종>

곡종별 품종별	생 산 계 획			자도 종자확보 및 과부족			*확보방법 (대체희망품종)
	면 적	종자량	생산목표	확보량	소요량	과부족량	
	a	kg	kg	kg	kg	kg	

### <보급종>

곡종별 품종별	생 산 · 공 급 계 획				자도 종자확보 및 과부족			*확보방법 (대체희망품종)
	면 적	종자량	생산계획	공급계획	확보량	소요량	과부족량	
	ha	kg	톤	톤	kg	kg	kg	

- 주) 가. 종자 확보량은 생산단계의 상위단계 자도 확보종자임  
 나. 과부족량은 자도 상위단계 확보량 대 소요량과의 차이임  
 다. 확보방법은 부족종자 확보계획이며, 대체희망 품종은 타도 전배며, 타도에서도 부족할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로 2~3개 품종을 희망 순서대로 명시  
 라. 원원종, 원종계획은 도(농업기술원),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계획 작성 제출  
 마. 광역시(특별시 포함)보급종 공급에 소요되는 원원종, 원종 생산은 광역시 승격이전에 소속되었던 해당 도에서 생산  
 -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